

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

제출법인	① 법인명	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		
	(전화번호:)			
	⑥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⑦ 창업일 년 월 일	
창업 중소기업 등의 구분	⑧ 창업중소기업 []		⑩ 창업보육센터사업자 []	
	⑨ 청년창업중소기업 []		⑪ 창업벤처중소기업 []	
			⑫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[]	
			⑬ 신성장서비스 중소기업 []	
			⑭ 재창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[]	
창업 지역	⑮ 수도권과밀억제권역 []		⑯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[]	
수입금액	⑰ 8,000만원 이하 []		⑱ 8,000만원 초과 []	
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	년 월 일까지	

감면세액계산내용

기본 감면 (최저한세 적용)	①⑨ 감면대상 산출세액	②⑩ 감면비율	50%	[]
			75%	[]
			100%	[]
②⑪ 기본 감면세액(①⑨ × ②⑩)				
추가 감면 (최저한세 배제)	1. 공제요건 :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가 최소고용인원 이상인지 여부 []여 []부 가.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물류산업 : 10명 나. 그 밖의 업종 : 5명			
	2. 고용증가 인원 계산			
	②⑫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	②⑬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	②⑭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(②⑫-②⑬)	
	명	명	명	
	②⑮ 감면대상 산출세액 (=①⑨)	②⑯ 감면비율 (=②⑩)	②⑰ 고용증가율 × 50/100 (②⑭/②⑬ × 50/100)	%
			②⑱ 한도율	50%(25%)
			②㉑ 추가감면을 Min(②⑰, ②⑱)	%
	③⑩ 추가 감면세액(②⑮ × ②⑯)			
③⑪ 총 감면세액(②⑪+③⑩)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5조제26항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1. ⑰, ⑱의 연간 수입금액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.
2.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"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"에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적습니다.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고, 같은 조 제1항(100% 감면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, 제6항(100% 감면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